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2015 행복출발 정기예금 』 특약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(제1조)
4. 주요 변경내용 : 상품명 변경, 기본적용약관 변경, 가입금액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<u>2015 행복출발 정기예금 (구 외환은행)</u> 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.) 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 및 거치식 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 예금종류 ~ 제4조 가입대상 (생략)</p> <p>제5조 최저 가입금액 <u>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6조 이자의 지급 ~ 제9조 만기후금리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 <u>행복출발 정기예금</u> 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.) 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<u>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</u>을 적용합니다</p> <p>제2조 예금종류 ~ 제4조 가입대상 (좌동)</p> <p>제 5조 가입금액 <u>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인당 1백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로 합니다.</u></p> <p>제6조 이자의 지급 ~ 제9조 만기후금리 (좌동)</p>	<p>상품명 변경, 기본적용약관 변경</p> <p>가입금액 변경</p>

「행복출발 정기예금 특약」

제1조 적용범위

행복출발 정기예금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.) 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제3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제로 합니다.

제4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 다만, 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 등 온라인채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개인에 한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인당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로 합니다.

제6조 이자의 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로 셈하여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매월 지급하고, 만기지급식의 경우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이자지급방법은 가입시 선택하여야 하며 만기지급식에서 월이자지급식으로의 중도변경은 할 수 있으나 월이자지급식에서 만기지급식으로 중도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분할해지

- ① 최종 해지분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분할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제8조 중도해지

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로 셈하여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

제9조 만기후 금리

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

부칙(1)

이 특약은 2014년 1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

부칙(2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